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정 고 시 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裁定)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안건 처리, 심의 절차, 재정 신청의 접수 및 보완, 사실 조사와 감정, 당사자의 의견진술, 재정서의 작성 및 송달 등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 심의 및 재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행법예고(2026. 0. 00. ~ 0. 00.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000호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안전성, 효율성, 공정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 39조의9 등에 따른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재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0월 00

산업통상부장관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 제39조의9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이란 법 제39조의9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하며, 위원 중 1명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된다.
3. “담당부서”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관된 산업통상부 소속의 담당부서를 말하며, 담당부서를 대표하는 자를 “담당부서장”이라 한다.
4. “재정(裁定)”이란 법 제39조의1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협의사항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제4호에 따른 재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 모두를 말하며, 재정을 신청한 자를 “신청당사자”라 하고, 재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상대당사자”라 한다.
6. “참고인”이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말하며,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7. “홈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한 해당 기관(회사 등)의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업내용·서비스 범위·공지 사항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3까지 해당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 안건의 심의·운영·재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2장 가스배관위원회 안전 처리절차 등

제4조(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담당부서는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과 법 제39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항과 관련된 승인·변경·재정 등의 신청접수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요건 심사 등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결과의 처리) ① 담당부서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관련자와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한다.

제3장 가스배관위원회 운영 기준 등

제6조(개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영 제19조의2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당해 상정할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9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
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39조의9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대행자를 지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소속의 5급 공무원이 담당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서기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 영 제1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제11조(안건의 작성 및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고안건 :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심의안건 :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의결안건 : 법 제39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을 결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변경 등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담당부서장이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행위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안건의 예비검토)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제11조에 해당

하는 안전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전에 예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의 예비검토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진행 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개회
2. 안전보고
3. 상임위원 등의 검토보고
4. 위원회 토의
5.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의견진술
6. 심의 또는 의결
7. 폐회

② 안전의 보고는 간사가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해당 안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진술) ① 위원장은 안전의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전 상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여 위원회에 참석·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해당 안전에 대한 필요한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자의 대리인을 당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당해 안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주심위원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 또는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안전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은 해당 안전에 대한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기 전에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심위원과 안건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주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서면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결의서”로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의서에 위원들이 기재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은 제17조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 날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 심의·의결 주문

2. 심의·의결 요지

3. 관계자의 진술 및 찬반의견

4. 적용법령

③ 간사는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회의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제18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관계기관 협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당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운영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내용에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사항 있거나 공익상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스배관위원회 재정(裁定) 기준

제21조(신의·성실) 위원회는 법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 재정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당사자 간 등은 신의·성실한 자세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 선임) ① 신청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청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3조(재정의 관리) ① 재정은 재정번호 및 재정명칭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재정 현황, 기결현황 및 처리지연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4조(재정번호의 부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정번호는 재정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재정접수년도
2. 재정접수월
3. 재정명칭
4. 접수일련번호

② 재정번호는 당해 재정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

제25조(재정의 명칭) ① 재정의 명칭은 재정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에 부여하며 해당 재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재정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재정안건에 대한 당사자 간 또는 재정사항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재정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의 신청 등) 영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1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
2.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지급해야할 금액과 정산방법에 관련된 서류

제27조(통지수령지의 기재) ① 당사자는 위원회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지받기 위하여 당사자의 실 거주지에 따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연락처(이하 “통지수령지”라 한다.)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지수령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나 대리인의 통지수령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실과 사유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통지수령지로 위원회의 전달사항이 통지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고지한다.

제28조(재정신청 각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재정신청서의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정신청 사항이 재정대상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같은 재정 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4. 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당사자가 불복하고 다시 재신청한 경우

제29조(재정신청 취하) ① 신청당사자는 해당 재정 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재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사실을 상대방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해당 재정을 취하한 사실도 상대방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대방당사자가 재정취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재정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당사자의 의견진술 출석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간 또는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명칭,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재정절차의 진행
2. 질서유지
3. 증거조사
4. 제출된 자료의 검증
5. 청문조서의 작성

제31조(자료수집) 위원회는 재정 당사자 간이 아니라도 해당 재정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제32조(감정인의 지정) ① 위원회는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정 대상 재정명칭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등

② 위원회는 당사자 간 등의 감정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는 영 제 19조의4제4항에 따라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33조(감정결과의 보고) ①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은 해당 재정에 대한 감정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해당 재정에 대한 감정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따로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증 및 조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해당 재정의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서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 재정명칭
2. 검증장소
3. 검증내용
4. 검증공무원의 성명 등

제35조(재정안의 상정)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재정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정번호 및 재정명칭

2. 당사자 간(신청당사자 및 상대당사자) 성명 및 주소

3. 신청취지 및 이유

4. 주문 및 주문사유

5. 재정결정 종결 연월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 및 주문사유에는 해당 주문이 타당함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주장과 기타 제시된 다른 의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을 표시한다.

제36조(재정결정의 유형) ①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재정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상당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손실보상 또는 비용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7조(재정의 효력) 위원회가 결정한 재정은 의결이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재정서의 송달) 위원회는 재정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39조(재정의 불복) 당사자는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여 송달한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40조(위원의 여비·수당 등)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는 정
부에서 발표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와 수당(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 또는 현지조사 등과 관련된 여비 : 「공무원 여비규
정」을 준용

2. 위원 수당 :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례비와 수당

가. 안건 검토 사례비

나. 위원회 참석 수당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수당은 매 회기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만 지급하고, 서면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응
한 위원에게만 같은 호 가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외의 장소에서 위원회를 개최
하는 경우에는 운임 등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의 여비·수당 등) 영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에
게는 제41조를 준용하여 여비와 수당(안건검토 사례비와 전문위원
회 참석 수당을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참고인의 여비) 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고의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

제4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촉(임명) 위원 사전 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가스배관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가스배관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가스배관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서 약 서

직위: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상기 본인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가스배관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가스배관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가스배관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의결서

20 . . .

심의·의결 제 - 호

건 명 :

상기 건에 관하여 가스배관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주 문 =

【 심의 · 의결 요지 】

【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찬반 의견 】

【 적용 법령 】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하였음.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가스배관위원회 결의서

심의·의결 제 - 호

1. 건 명 :

2.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의함.

찬 성	반 대
위원 (인)	위 원 (인)

4. 검토의견(제출된 검토의견은 의결서의 심의·의결요지에 기재됩니다)

20 . . .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가스배관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 기 타

4. 회의사항

5. 심의 · 의결 내용

[별지 제6호 서식]

의 안 관 리 부
(제 ○ ○ ○ 차 회의)

의안번호	제출자	안건명	안건요지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내용	비고

<뒷 면>

기재요령

의안번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안건인 경우에는 심의 제(년도)-(일련번호)
2. 의결안건인 경우에는 의결 제(년도)-(일련번호)
3. 보고안건의 경우에는 보고 제(년도)-(일련번호)

[별지 제7호 서식]

여비 청구서 및 영수서

금 액 : 원정

내 역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 비	기 타	합 계
종 별						
구간, 일시						
금 액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구 및 영수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38